예수금이용료지급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에 따라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예탁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예탁금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용료 산정기준

1) 회사는 투자자의 예탁금에 대하여 이용료를 지급한다.
2) 이용료는 지급대상기간의 예탁금 일평균 잔고에 제3조의 이용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3) 지급대상기간은 전분기의 지급일로부터 금번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정기지급은 1,4,7,10월 두 번째 일요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대상계좌의 폐쇄 시에는 최종 지급일로부터 계좌폐쇄일 전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좌폐쇄일에 당해 예탁금이용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3. 이용료율 및 변경절차

1) 회사가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율은 한국증권금융이 적용하는 이율로 한다.
2) 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7영업일전까지 그 내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및 영업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에 대한 통지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및 영업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